#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정성호·김병주·김성환

김정호 · 문진석 · 박 정

소병훈 · 송기헌 · 안규백

윤후덕 · 최기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 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			
사업비 <u>500억원</u> 이상인 신규사	1 <u>천억원</u>		
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			
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			
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